

# 사천시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1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3. 12. 13

제 출 자 : 박종권의원의외 4인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, 명칭변경, 기능 통합과 이관 등 업무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(안 제3조)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총 무 위원회	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 담당관, 총무국, 체육시설 관리사업소, 종합사회복지 관, 위생환경사업소	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,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 소, 종합사회복지관, 환경 시설사업소, 문화예술회관
산업건설 위원회	해양수산담당관, 지역개발 국, 보건소, 농업기술센터	지역개발국, 보건소, 농업 기술센터

## 3. 법적근거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

## 4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2항 제2호 중 “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”으로 하고, 동조 동항 동호 중 “위생환경사업소”를 “환경시설사업소”로 하며, 동조 동항 동호 중 환경시설사업소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삽입한다.

제3조 제2항 제3호 중 해양수산담당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총무위원회  <u>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, 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 종합사회복지관, 위생환경사업소</u>                     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 <u>해양수산실, 지역개발국, 보건소, 농업기술센터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총무위원회  <u>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, -----</u>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환경시설사업소,</u>  <u>문화예술회관</u> -----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 <u>지역개발국, 보건소, 농업기술센터</u> -----</p>

# 사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3. 12. 12

제 출 자 : 성재윤의원 외4인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(2003. 12. 13)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등 지급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함(안 제2조제2항)

- 월 55만원이내 → 월110만원 이내(+55만원)

나.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함(안 별표1 및 별표 2)

(1) 국내여비(숙박료)

- 의장·부의장 : 41,000원 → 46,000원(+5,000원)

- 의원 : 22,000원 → 25,000원(+3,000원)

(2) 국외여비

(가) 일비

- 의장·부의장 : 25 \$ → 35 \$ (+10 \$)

- 의원 : 20 \$ → 30 \$ (+10 \$)

(나) 숙박료

- 의장·부의장 : 130 \$ ~ 72 \$ ⇒ 166 \$ ~ 92 \$ (+36 ~ 20 \$)

- 의원 : 114 \$ ~ 46 \$ ⇒ 145 \$ ~ 62 \$ (+31 ~ 16 \$)

### 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

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발췌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연간 92,400천원 소요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실
- 라. 기 타
  - (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  - (2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  - (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550,000원” 을 “1,100,000원” 으로 한다  
별표1,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는 월<u>550,000원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1,100,000원</u> -----.</p>

[개정 전]



[별표 1]

국내여비기준표(제7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장 부의장	1등급	2등급 정액	정액	정액	10,000	<u>41,000</u>	25,000
의원	2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<u>22,000</u>	18,000

비고 : 1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3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고,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[개 정 후]

[별표 1]

국내여비기준표(제7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장 부의장	1등급	2등급 정액	정액	정액	10,000	<u>46,000</u>	25,000
의원	2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<u>25,000</u>	18,000

비고 : 1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3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고,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[개정 전]

[별표 2]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

불화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일 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 비 (1일당)	준비금		
								15 일 미 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 일 이 상
의 장 · 부 의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</li> <li>•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</li> <li>•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</li> </ul>	1 등 정 액	실	가등급 <u>25</u>	가등급 <u>130</u>	가등급 107	140	170	195
					나등급 <u>25</u>	나등급 <u>90</u>	나등급 78			
의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</li> </ul>	2 등 정 액	비	가등급 <u>20</u>	가9급 <u>114</u>	가등급 81	130	155	180
					나등급 <u>20</u>	나등급 <u>74</u>	나등급 59			
					다등급 <u>20</u>	다등급 <u>55</u>	다등급 44			
					라등급 <u>20</u>	라등급 <u>46</u>	라등급 37			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등급 : 뉴욕, 런던, 파리, 스톡홀름, 동경, 홍콩, 모스크바

나. 나등급

(1) 아시아주 · 대양주 : 리본, 파푸아뉴기니

(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워싱턴, 로스앤젤레스, 샌프란시스코, 트리니다드토  
바고, 자메이카

- (3) 유럽주 :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스위스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, 러시아, 우크라이나, 헝가리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가봉, 중앙아프리카, 카메룬, 우간다, 코트디부와르, 니제르, 자이르, 수단, 남아프리카공화국

다. 다등급

- (1) 아세아주·대양주 : 인도, 터키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필리핀, 타이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, 중국, 베트남
- (2) 남·북아메리카 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아이티, 바베이도스, 브라질, 칠레, 수리남
- (3) 유럽주 : 덴마크, 아일랜드, 포르투갈, 헝가리, 체코, 폴란드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유고슬라비아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요르단, 바레인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이라크, 리비아, 이집트, 케냐, 나이지리아, 세네갈, 라이베리아, 모리타니아, 시에라리온, 이디오피아, 부르키나파소, 모리시어스, 잠비아, 알제리

라. 라등급

- (1) 아세아주·대양주 : 인도네시아, 미얀마, 스리랑카, 튀지, 네팔, 몽골
- 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구아테말라, 엘살바도르, 도미니카공화국, 콜롬비아, 베네수엘라, 에쿠아도르, 페루, 볼리비아, 우루구아이, 파라과이, 아르헨티나
- (3) 유럽주 : 해당국가 없음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레바논, 예멘, 모로코, 튀니지, 루안다, 말라위, 스와지랜드, 가나, 소말리아, 나미비아, 탄자나나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


- (1) 아시아주 · 대양주 : 대만, 북경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
- (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- (3) 유럽주 :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- (4) 중동 · 아프리카주 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- (1) 아시아주 · 대양주 : 뉴질랜드, 미살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터키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
- (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소도스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, 안티구아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
- (3) 유럽주 : 그리스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유고슬라비아, 포르투갈, 폴란드
- (4) 중동 · 아프리카주 :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리비아, 모리시어스, 모잠비크, 바레인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토메 프린시페, 시에라리온, 요르단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카다르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- (1) 아시아주 · 대양주 : 네팔, 라오스, 마이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
- (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쿠아도르, 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(3) 유럽주 : 몰도바,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
- (4) 중동 · 아프리카주 : 가나, 감비아, 기네비스, 기니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모리타니아, 세네갈, 소말리

아, 스와질랜드, 알제리, 예멘, 이디오피아, 이라크, 잠비아, 짐바브웨, 튀니지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도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
#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3. 12. 12

제 출 자 : 이문상의원의외 6인

## 1. 제안이유

- 안전심의 요체가 되는 의안의 제출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일정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함(안 제19조)
  - 소관 위원회의 적절한 사전검토 시간이 확보 되도록 「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5일전까지」로 정하고 「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」로 합리적으로 의안 제출 시기를 정함.

## 3. 법적근거

가. 지방자치법 제58조

## 4. 개정조례안 : 별첨



사천시의회규칙 제 호

##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</p> <p>② &lt;신설&gt;</p>	<p>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<u>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